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61
----------	------

2020년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시장
- 나. 제출일 : 2020년 5월 25일
- 다. 회부일 : 2020년 5월 29일
- 라. 상정일 :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가. 제안이유

- 서울시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통합하거나 삭제하고, 조례의 체계 등을 정비함.

나.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에서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의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시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함)으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편성 등 예산과 정으로 확대함(안 제1조,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1)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조문을 통합하고, 위원 정수를 300명 이내에서 500명 이내로 확대함.

2) 위원의 임기를 1년(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에서 위촉된 날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로 하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신규 위원이 위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의 회의 일정 및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함.

4) 민관예산협의회의 심의대상에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심의 대상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위원 정수를 2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시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자치구별로 두는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자치구별 민관협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협치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라.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명칭을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위원의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씩을 포함함)로 확대하는 등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25조 및 제26조).

- 마.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 조문을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
- 바. 우수 사업이나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금 등의 종류·액수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 다. 입법예고(2020. 4. 2. ~ 4. 22.)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통합 등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정수를 각각 300명 이내에서 500명 이내, 2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 2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현실화 하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과정으로 확대하려는 것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개정 내용>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 위원 정수를 300명 이내에서 500명 이내로 확대함.
 - 임기를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에서 위촉한 날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로 조정함.
- 민관예산협의회의 위원 수 및 참여 시민의 범위를 확대(안 제22조)
 - 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2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함.
 -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현행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함.
- 자치구별로 두는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자치구별 민관협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협치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로 변경하고, 지원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 및 의결 정족수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및 제26조).
- 「지방재정법」에서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의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가. 시민 참여 범위의 확대(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안 제1조와 안 제4조 등은 시민의 참여를 “예산편성과정”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해왔던 동 조례의 문구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u>예산편성과정</u> 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예산</u> <u>편성 등 예산과정</u> ----- ----- ----- -----.
제4조(<u>법령준수의무</u>) 이 조례에 따라 <u>예산편성 시</u> 시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u>법령준수 의무</u>) ----- - <u>다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u>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 ----- -----.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u>예산편성과정</u> 에 시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u>예산과정</u> ----- ----- -----.
제7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제7조(시민의 권리) -----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허동 계획,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 편성 등-----
-----.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 편성의 방향
2.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토론허동 계획
3. 시민 및 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
---- 편성 등-----
-----.

② ----- 예산과정에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심의 -----

-----.

-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게 된 연혁을 살펴보면, 2006년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최초로 법에 명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2006년)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2011.3.8.)으로 주민참여 예산 운용이 의무화 되었고, 서울시도 이에 따라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 2012. 5. 22.)한 바 있음.

「지방재정법」 (2011년)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018년 「지방재정법」 동 조항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정(2018. 3. 27.)되었으며, 동 조례개정안은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법」 (2018년)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 다만, 동 법에서 “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에도 동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민의 예산과정에서의 참여는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여 민주적 대표성을 지닌 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및 결산 승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p>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

- 또한, 예산과정이란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하고,

-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구성되는바, 각 과정별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경우,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의견 수렴 등(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안 제8조는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으로 변경하고,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정리하려는 것이며,
-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2)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의견 수렴 등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u>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u> 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	-----	<u>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u> (이하 “ <u>운영계획</u> ”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u> 은 예산편성방향, 시 예산		② 제1항에 따른 <u>운영계획</u> 은 다		<u>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u>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1. 예산 편성의 방향
2.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토론 활동 계획
3. 시민 및 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
----- 편성 등-----

-----.

② ----- 예산과정에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심의 -----

-----.

제10조(의견 제출) --- 예산 편성 등과 관련된 -----
----- 운영계획-----

-----.

○ 안 제9조제1항과 안 제10조는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대상을 “예산편성”에서 “예산 편성 등”으로 개정하려고 하나, 상위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의견 수렴 방법을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에서 “예산과정에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심의”로 개정하려고 하나, 심의가 누가 무엇을 심의하는 것인지 등 그 의미하는 바가 불명확하고, “심의”가 의견 수렴의 한 방법으로 적합한 방안인지 검토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9조제1항과 안 제9조제2항은 유사한 조항으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안 제9조1항	안 제9조2항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u>예산과정에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심의</u> 등을 통해 시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9조(의견수렴 절차)	제9조(의견수렴 절차)	제9조(의견수렴 절차)

<p>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p>	<p>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p>	<p>등) ① 시장은 <u>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필요시 <u>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u> 등을 통해 시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필요시 <u>예산 과정에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심의</u> 등을 통해 시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p>	<p><삭 제></p>

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등(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위원회 구성) ① <u>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신 설></p> <p><신 설></p>	<p>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u></p> <p>-----.</p> <p>1. <u>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u></p> <p>2. <u>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조정</u>한</p>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4/5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된 자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5.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⑤ 위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때는 반드시

예산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3.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4.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500명-----

③ 제2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

-----선정된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의회 및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
-----.

제14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위촉된 날부터 다음 해 1월말까지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이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활동한다.

② -----
----- 임기 만료 전-----.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17조(위원장,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를 둔다.

② 위원장은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및 기능분과장 중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총회개최 때마다 선출하고, 총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간사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삭 제>

제15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선출하고, 임기 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 안 제13조는 현행 조례 제19조(기능)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으로 조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함)의 기능을 “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예산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u>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5호의 심의·결정사항은 8월말까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u> <u>2.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u> <u>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u> <u>4.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시민의견 사업을 민관예산협의회에 심사 의뢰</u> <u>5. 시민 및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 그 밖의 기능분과의 의견 심의·조정·결정</u> <u>6. 총회·기능분과 개최 및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u> <u>7.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u> 	<p><u>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u> <u>2.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예산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u> <u>3.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u> <u>4.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u> <u>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u>

8.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9. 위원회 사업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

-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그 기능을 추가하여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을 추가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따르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위원회의 기능 중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p>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또한, 동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심의·조정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심의기구인바,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행정 집행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총회) 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안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p>	<p>제17조(총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한편, 개정조례안 제21조에 따르면, 동 위원회의 기능으로 “현장 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위원회가 행정집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1조(현장조사 및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p>

- 특히, 안 제9조에서 이미 시장에게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중복적이고 불필요 규정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u>편성</u> 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u>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u> 등을 통해 시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 ----- <u>편성 등</u> ----- ----- -----. ② ----- <u>예산과정에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심의</u> ----- ----- -----.

- 안 제13조제2항은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을 300명 이내에서 50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u>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u> ----- -----.
② 위원회는 <u>위원장과 부위원장</u> 을 포함하여 <u>30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u>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u> ----- <u>500명</u> ----- -----.

- 동 위원회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250명 규모였으나, 2017년 조례 개정을 통해 300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50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
- 동 위원회의 구성방식은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위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2019년에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은 773명이고,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수료인원은 3,593명 규모임.

〈예산학교 개요 및 회원 현황〉

- 회원요건 : 서울시 예산학교 교육과정 수료 시 자격부여
 - 예산학교 수료 기준 : 6시간(3시간×2회) 이수

○ 예산학교 교육과정

〈주요 교육내용〉

- 참여예산제 개요 및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현황
- 지방예산 기본 이해 및 서울시 예산현황, 시민제안사업 사례
- 사업제안 및 평가 실습(워크숍) 등

〈교육 커리큘럼 (‘20년 예산학교 기본교육과정 기준)〉

구분	교육명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시간
1회차 (3시간)	[이론교육] 내가 궁금한 참여예산	우리는 왜 예산학교에 왔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분위기 형성 및 참여자 소통 촉진 • 프로그램 및 유의사항 (교육 개요 및 특징, 수료 기준 및 절차 등) 	30분
		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예산의 의의 및 현황 • 시민(및 참여자)의 참여이익, 참자의 역할 등 	60분
		서울시 예산과 시민참여예산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예산 기본 이해, 서울시 예산 현황 및 특징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역사 및 현황, 참여예산 사례 • 시민의 참여 방법 및 역할 등 	90분
2회차 (3시간)	[워크숍] 내가 해보는 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작성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 숙의과정을 통한 사업제안서 작성 실습 	90분
		우선순위 기준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심사기준) 기준 개요 • 토론을 통한 우선순위 기준 이해 및 설정 실습 • 유의점 이해(성인지, 사회적 포용성 등) 	90분

- 예산학교 회원 : 시민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 취득,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투표 시 5%의 투표권 부여

- '12~'19년도 총 예산학교 회원 수(순계) : 3,593명

- 연도별 예산학교 회원 수

(단위 : 명)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회원(명)	235	247	248	361	300	970	885	773	-

*코로나 19 확산방지 및 예방 위해 '20년 5월 기준 신규 회원 없음.(’20년 6월부터 교육 예정)

*예산학교 회원수(순계) : 예산학교 수료자 + 2016년 이전 참여예산위원 - 중복자

-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은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참여위원 수의 증가로 인한 시민참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최근 3년간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496,775천원	672,692천원	729,200천원
전년대비 증감률	29.2%	35.4%	8.4%

- 여전히 진정한 시민참여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참여 시민에 대한 정보 및 통계관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제도화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시민참여는 그 취지는 좋지만 전문성과 대표성 문제에 대한 치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민참여제도는 특정지역 이익만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와 업무도 중첩될 수 있다는 지적³⁾이 있으며, 시민의 참여가 시정(市政) 전반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개별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예산을 숙의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및 전문성 부족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동아일보(2019.6.21.) 박원순 시장 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무산 배경인 시민참여-숙의예산제... 시민참여 취지 좋지만 전문-대표성 숙제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1/96095315/1>

- 이와 더불어 현행 예산 학교의 이수 시간이 6시간이고, 앞서 살펴 보았듯이 교육 프로그램이 지극히 기초적인 수준이어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민관예산협의회 등에서 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 예산학교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의 삭제(안 제18조의2)

- 개정안은 조례 제18조의2의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을 삭제하고, 제22조에 일부를 반영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u>제18조의2(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u>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u> <u>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u> <u>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u> <u>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u> <u>5.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u> 	<p><u><삭 제></u></p>

	<p>안제22조⑤ <u>민관협의회에서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u></p>
--	--

- 개정안은 제18조의2 전체 조항을 삭제하면서 일부 심사기준을 민관예산 협의회 조항으로 규정하려고 하나,
- 광역에서의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경우, 결국 사업은 지역(자치구)을 기반으로 집행하게 되는바, 명확한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 사업 기준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할 기준 등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광역에서의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자치구에 서울시 재원을 교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이 없다는 점과 아울러 자치구 단위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총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민관예산협의회의 위원 수 및 참여 시민 범위 확대 등(안 제22조)

- 안 제22조는 민관예산협의회의(이하 “민관협의회”라고 함)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민관협의회는 이미 편성된 예산(현재 속의예산시민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이후 민관협의회와 통합 운영 예정)과 시민참여 예산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실·본부·국별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특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 의 회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의1(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실·국·본부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민관예산협의회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p> <p>③ 민관예산협의회는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한다.</p> <p>④ 민관예산협의회는 회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민관예산협의회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⑥ 간사는 민관예산협의회 의 사</p>	<p>제22조(민관예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과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본부·국별로 민관예산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민관협의회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② 민관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특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의 회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p> <p>③ 민관협의회의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p>

무를 처리한다.

⑦ 그 밖의 시 재정분야에 관한 시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분과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의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민관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관협의회에서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⑥ 민관협의회의 회장은 민관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⑦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그 동안 조례의 근거 없이 ‘숙의예산시민회’를 운영하는 등 의회의 조례 의결권을 훼손한바 있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숙의예산시민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⁴⁾.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 ④ 생략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4) 조례 개정이후 민관협의회와 숙의예산시민회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임.

- 숙의예산시민회의 현행 구성은 13개 실·국별 35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현행 13개 실국 기준으로 100명 이내로 구성시 1,30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나,
 - 실국의 증가에 따라 구성인원은 더 증가할 수 있는 구조로, 시민 참여로 인한 참여 비용의 과다 지출, 인원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효율적인 사업 선정 및 심사 저해 등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현황〉

- 기능: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사업 예산 속의

(단위:명)

연번	해당실국	총인원 (A+D)	조례 개정후	시민합계 (A) =B+C	성비 (남:여)	전문 가등 (B)	일반 시민 (C)	공무원 (D)
1	노동민생정책관	20	100이내	16	9:7	8	8	4
2	복지정책실	39	100이내	32	19:13	16	16	7
3	기후환경본부	26	100이내	22	11:10	10	11	4
4	여성정책실	35	100이내	29	12:17	12	17	6
5	민주주의위원회	67	100이내	64	30:33	31	32	3
6	시민건강국	28	100이내	28	13:15	14	14	미정
7	푸른도시국	20	100이내	15	8:7	6	9	5
8	안전총괄실	20	100이내	20	10:10	10	10	미정
9	관광체육국	22	100이내	20	12:8	10	10	2
10	주택건축본부	21	100이내	18	9:9	9	9	3
11	도시교통실	22	100이내	17	10:7	9	8	5
12	도시재생실	20	100이내	15	6:9	7	8	5
13	문화본부	20	100이내	16	8:8	8	8	4
합계		358	1,300명 이내	310	157:153	150	160	48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현황〉

- 기능 : 시민 제안 사업 심의 · 조정

분 야	구 성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10개 분야)	참여예산위원(20명), 민간전문가(3명), 사업부서팀장(4명) 분야별 27명

바.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명칭 변경과 위원 정수 확대(안 제25조, 안 제26조)

- 안 제25조는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로 개정하고, 구성을 25명이내에서 50명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 그 기능으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예산교육,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역회의, 위원회, 협의회 운영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그 밖의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5조(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 -----.
<신 설>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신 설>	2. 예산교육, 시민참여예산제 홍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생략)

④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를 둔다.

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총괄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위원회, 협의회 운영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4.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5.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6. 그 밖의 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50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 운영 담당 사무관-----
-----.

<p>⑥ ~ ⑧ (생략)</p> <p>⑨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p> <p>⑩ 협의회는 시민들의 예산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p> <p>⑪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p> <p>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협의회 회장은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최한다.</p>	<p>⑤ ~ ⑦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 회장은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최한다.</p>
<p><신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바, 구성인원을 두배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구성시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구성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와 위원 구성시 공개 모집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동 지원협의회의 기능으로 “예산교육,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이 동 지원협의회에서 수행하기에 타당하고 적합한 사무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개선 등(안 제28조)

- 안 제28조는 위원회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려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	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u>민관협의회</u> ----- -----.
	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신 설>

<신 설>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종류·액수는 우수사업 및 의견을 선정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현재 동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민관예산협의회, 온예산분과, 홍보분과”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 2019년 새로 구성된 숙의예산시민회는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사유 등으로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참여에 대한 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왔음.

현행 기준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계 : 567,500천원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비용 추계 ○ 민관예산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0원*200명*18회=72,000천원 ○ 온예산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0원*75명*15회=22,500천원 ○ 홍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0원*25명*10회=5,000천원 ○ 숙의예산시민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분야×150,000원*20명*12회=468,000천원 ▶ 2020년 6개분야는 해당 실본부국에 편성 되고, 7개분야는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 편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계 : 668,750천원 ⇒ 1인당 수당 및 실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2만원~10만원 사이로 결정될 예정임 ※ 1인당 7만원 지급 시 : 936,250천원 ○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시민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0원*15회*800명(참여예산위원400명 + 전문가등 400명)=600,000천원 ○ 온예산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0원*75명*15회=56,250천원 ○ 홍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0원*25명*10회=12,500천원

- 위원들의 현장출장(확인) 여비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1일 기준 4만원을 지급하여 왔음.

〈2017년~2019년 참여예산위원 현장 확인 내역〉

내역	위원 수	지급액 (1인, 1일 기준)	현장 수	현장확인 기간	지급금액	비고
2017년	94명	40,000원	231개소	6.27.~ 7.6.	6,160천원	위원별 출장 일수는 다름
2018년	102명	40,000원	147개소	5.27.~ 6.4.	5,948천원	
2019년	118명	40,000원	86개소	5.16.~5.30.	4,720천원	
총계	314명		464개소		16,828천원	

- 개정조례안 제28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 10만원, 2시간 초과 5만원(사이버 위원회 기본 5만원, 2시간 초과 2만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참석수당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일 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사이버 위원회	회 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3.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 :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4. 시의원에 대한 실비 :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각 위원회 등의 위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면서 수당 등 지급 규정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규모의 참석수당 등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개정조례안의 위원 확대 계획〉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 위원 정수를 300명 이내에서 500명 이내로 확대함.

○ 민관예산협의회의

- 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분야별 2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함.

○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 위원 정수를 현행 25명이내에서 50명이내로 확대함.

- 동 개정안과 함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사유로 ‘기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며, ‘동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출하고 있으나,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불성실한 비용 추계를 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동 실비 지급 조항을 개정하면서 1인당 수당과 실비를 2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결정할 예정이라는 무책임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더불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일반시민과 전문가에게 차별적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1년에 10회에서 18회 정도 개최하는 동위원회의 참석 수당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참여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및
- 서울시에서 모집하여 대규모로 운영하는 유사 위원회(청년정책네트워크(1천명 규모, 서울시민회의(3천명 규모))의 경우에도 동 사례가 선례로 적용될 수 있는바, 신중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여예산위원 수당 및 실비 비용 추계〉

개정 전	개정 후
<p>○ 총계 : 567,500천원</p> <p>※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비용 추계</p> <p>○ 민관예산협의회 - 20,000원*200명*18회 = 72,000천원</p> <p>○ 온예산분과 - 20,000원*75명*15회 = 22,500천원</p> <p>○ 홍보분과 - 20,000원*25명*10회 = 5,000천원</p> <p>○ 숙의예산시민회 - 13개 분야 × 150,000원*20명*12회 = 468,000천원 ▶ 2020년 6개분야는 해당 실본부국에 편성 되고, 7개분야는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 편성됨</p>	<p>○ 총계 : 668,750천원</p> <p>⇒ 1인당 수당 및 실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2만원~10만원 사이로 결정될 예정임</p> <p>※ 1인당 7만원 지급 시 : 936,250천원</p> <p>○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시민회) - 50,000원*15회*800명(참여예산위원400명 + 전문가등 400명) = 600,000천원</p> <p>○ 온예산분과 - 50,000원*75명*15회 = 56,250천원</p> <p>○ 홍보분과 - 50,000원*25명*10회 = 12,500천원</p>

- 한편, 동 조례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일반 조례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 기구인 “온시민예산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바, “온시민예산광장”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등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20년 온시민예산광장 추진현황〉

용역개요

- 용역명 : 「2020년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운영」 용역
- 계약금액 : 총418,000,000원
- 과업기간 : 2020. 2월 ~ 8월

○ **과업내용**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1,000명 선발
- 온라인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 학습·테스트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숙의 과정 온라인 모니터링 진행 및 활동 관리
-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의견 분석 시행 및 결과서 제출

○ **선정방법** :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 **참여단 구성**

-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자 1,000명(인구현황에 따른 비례할당 표집)
- **모집기간** : 2020. 3. 25.(수) ~ 4. 16.(목)
- **모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CATI⁵⁾ 조사(유/무선 RDD⁶⁾ 활용

구분(명)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세 이하	2	3	12	13	5	6	11	10	11	10	41	42
20-30대	11	12	61	62	24	27	67	64	42	45	205	210
40-50대	11	10	62	63	25	26	66	64	46	50	210	213
60세 이상	5	4	26	27	9	8	21	24	12	18	73	81
소계	29	29	161	165	63	67	165	162	111	123	529	546
합계	58		326		130		327		234		1,075	

※ **활동종료까지 중도 이탈자를 고려하여 약10% 추가 모집 진행**

※ 권역구분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활동분야 선정** : 선호도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성별/연령별/권역별 구분하여 구성**
 - 성별은 전체의 60%, 연령은 전체의 50%, 권역은 전체의 40%가 넘지 않도록 배분
- **활동내용** : 시민참여단은 사전교육 이수 후, 전용 웹페이지에서 숙의결과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온시민예산광장)에서 의견 개진 및 2회 설문조사 실시해야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기능 및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의견 수렴 절차를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으로 규정함(안 제9조).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에 대한 지원 기능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안 제21조).
-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 동 조례의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협의회 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28조제3항).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5)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6) Random Digit Dialing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561
----------	-------------

제안연월일 : 2020년 6월 17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기능 및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견 수렴 절차를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으로 규정함(안 제9조).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에 대한 지원 기능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안 제21조).
-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 동 조례의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협의회 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28조제3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안 제13조제1항제4호 중 “마케팅” 을 “마케팅 지원”으로 한다.

안 제21조 중 “하거나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를 “지원하거나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2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한다.

안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안 제25조제1항제2호 중 “활동”을 “활동지원”으로 하고, 안 제4호와 안 제6호를 삭제하며, 안 제5호 중 “마련”을 “마련 지원”으로 하여 안 제4호로 한다.

안 제28조제3항 중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를 “범위 안에서 실비” 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14조제2항” 을 “제14조”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p> <p>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필요시 <u>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u></p> <p>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5호의 심의·결정사항은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u>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u></p> <p>2. <u>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u></p>	<p>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p> <p>① <u>시장은 예산 편성 등</u> ----- ----- -----.</p> <p>② ----- <u>예산 과정에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심의</u> ----- ----- ----- -.</p> <p>제13조(위원회의 구성)</p> <p>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 <u>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u></p> <p>2. <u>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예산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u></p>	<p>제9조(의견수렴 절차) <u>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u></p> <p>② <삭 제></p> <p>제13조(위원회의 구성)</p> <p>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 <u>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u></p> <p>2. <u>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예산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u></p>

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4.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시민의견 사업을 민관예산협의회에 심사 의뢰

5. 시민 및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 그 밖의 기능분과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6. 총회·기능분과 개최 및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

7.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8.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9. 위원회 사업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 설>

3.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4.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21조(현장조사 및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3.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4.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21조(현장조사 및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지원하거나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민관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과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본부·국별로 민관예산협의회의(이하 “민관협의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민관협의회의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특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의의 회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의회의의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협의회의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민관협의회의 위원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민관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과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본부·국별로 민관예산협의회의(이하 “민관협의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민관협의회의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특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의의 회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의회의의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협의회의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민관협의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관협의회에서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⑥ 민관협회의 회장은 민관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⑦ 민관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제18조의2(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

제18조의2 <삭 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 제>

⑤ 민관협회의 회장은 민관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⑥ 민관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제22조의2(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5조(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위원회, 협의회 운영 등 시민참여 예산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25조(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위원회, 협의회 운영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신 설>

<신 설>

<신 설>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

조 방안 모색

5.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 그 밖의 협의회의 목

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8조(행정적·재정적 지

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민관협의회-----

-----.

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4. <삭 제>

4.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지원

<삭 제>

제28조(행정적·재정적 지

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민
관협의회-----

-----.

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위촉(연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위촉(연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법령준수의무)”를 “(법령준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라 예산편성 시”를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를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편성”을 “예산 편성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 편성의 방향
2.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토론 활동 계획
3. 시민 및 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편성관련”을 “예산 편성 등과 관련된”으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운영계획”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하고, 제15조 앞에 “제4장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9조의1,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한”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300명”을 “500명”으로 한다.

1. 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
2.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3.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4.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13조(중전의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4/5이상으로 한다”를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정된 자”를 “선정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중전의 제15조) 제5항 중 “위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을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을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의회 및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1년으로”를 “위촉된 날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을 “임기 만료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이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활동한다.

제15조(중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선출하고, 임기 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6조(중전의 제18조)제3호 중 “민관예산협의회”를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닌 자가”를 “아닌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총회”를 “시장은 총회”로, “서울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과정에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 절차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중전의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현장조사 및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지원하거나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중전의 제19조의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민관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과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본부·국별로 민관예산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민관협의회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특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의 회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민관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관협의회의 회장은 민관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⑥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제18조의2의 제목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을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기준)”으로 하여 제22조의2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삽입한다.

제23조(중전의 제13조)의 제목 “(구성 및 운영)”을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각 자치구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협치회의를 포함한다)”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를 “시민제안사업을 심의하고, 사업의”로, “7월말”을 “8월 초”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구성 및 운영)”을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을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로, “25명”을 “50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운영 총괄 담당사무관”을 “운영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위원회, 협의회 운영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4.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지원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의 제목 “지 원 등”을 “지원 등”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재정 및 실무지원)”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관예산협의회”를 “민관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관예산협의회”를 “민관협의회”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를”을 “**실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종류·액수는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선정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 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위촉(연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u>예산편성과정</u>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예산</u> <u>편성 등 예산과정</u>----- ----- ----- ----- -----.</p>
<p>제4조(<u>법령준수의무</u>) 이 조례에 따라 <u>예산편성 시 시민참여 절차</u>.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조(<u>법령준수 의무</u>) ----- - <u>다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u>(「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 <u>에</u> ----- ----- -----.</p>
<p>제5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시장은 <u>시민참여예산위원회</u>와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과</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u>예산</u></p>	<p>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u>예산</u></p>

현행	개정안
<p><u>편성과정에 시민의견 제출의 범위</u>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p>	<p><u>과정</u>----- ----- -----.</p>
<p>제7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u>예산편성과</u>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7조(시민의 권리) ----- ----- <u>예산 편성 등</u>----- -----.</p>
<p>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u>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u>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u> 예산편성방향,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 계획, <u>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u>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p>	<p>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 ----- <u>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u>----- -----.</p> <p>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예산 편성의 방향</u> 2. <u>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토론 활동 계획</u> 3. <u>시민 및 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계획</u> 4. <u>예산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u>
<p>제9조(<u>의견수렴 절차 등</u>) ① 시장은 <u>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u></p>	<p>제9조(<u>의견수렴 절차</u>) <u>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u></p>

현행	개정안
<p>제3장 <u>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u> 제4장 <u>시민참여예산위원회</u>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u>시의 예산</u> <u>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한 시</u> <u>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u> <u>라 한다)를 둔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p> <p>② 위원회는 <u>위원장과 부위원</u> <u>장</u>을 포함하여 <u>30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자</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u>해당하</u> <u>는 자는 총 위원의 4/5이상으로</u></p>	<p>제3장 <u>시민참여예산위원회</u> <u><삭 제></u>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u>시장은</u> <u>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u> <u>하여-----</u> <u>-----.</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u> <u>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u> <u>한 의견제출</u> 2. <u>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민</u> <u>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하</u> <u>는 예산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u> 3. <u>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u> 4. <u>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u> <u>케팅 지원</u> 5. <u>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u> <u>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u> <u>는 활동</u> <p>② -----<u>위원장 1명과 부</u> <u>위원장 1명-----500명---</u> <u>-----.</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사람</u>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u>해당</u> <u>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5분의 4</u></p>

현행	개정안
<p><u>한다.</u></p> <p>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u>선정된 자</u></p> <p>4. <u>시의회가 추천하는 자</u></p> <p>5. <u>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u></p> <p>⑤ <u>위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u> 추천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⑥ <u>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u> 수료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p> <p><u>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②</u> 위원의 임기는 <u>1년으로</u>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u>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u></p> <p>1. ----- ----- ----- -----<u>선정된 사람</u></p> <p>2. <u>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u></p> <p>3. <u>시장이 추천하는 사람</u></p> <p>⑤ <u>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u> ----- ----- -----.</p> <p>⑥ <u>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의회 및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u> ----- -----.</p> <p><u>제14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u> -----<u>위촉된 날부터</u> <u>다음 해 1월말까지로</u>----- ----- - <u>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이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활동한다.</u></p>

현행	개정안
<p>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u>임기전</u>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② ----- ----- <u>임기 만료 전</u>-----.</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p>	<p><삭제></p>
<p>제17조(위원장, 간사) ① 위원회는 <u>위원장, 간사를 둔다.</u></p>	<p>제15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u>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② 위원장은 <u>민관예산협의회 회장 및 기능분과장 중 호선한다.</u></p>	<p>② 위원장은 <u>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선출하고, 임기 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③ 위원장은 <u>총회개최 때마다 선출하고, 총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u></p>
<p>④ 간사는 <u>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담당 부서장이 된다.</u></p>	
<p>⑥ 간사는 <u>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u></p>	
<p>제1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p>	<p>제16조(운영원칙) ----- ----- --.</p>
<p>1.·2.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u>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별 자율적 운영 유도</u></p>	<p>3. <u>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u> -----</p>
<p>4. ~ 6. (생략)</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2(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u>시민참여예산사업</u>을 선정하여</p>	<p>제22조의2(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p>

현행	개정안
<p><u>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u> <u>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u> <u>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u> <u>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u> <u>5.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u> <p><u>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5호의 심의·결정사항은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u> <u>2.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u> <u>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u> <u>4.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시</u> 	<p><u>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u> <u>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u> <u>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u> <u>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u> <u>5.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u>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u>민 의견 사업을 민관예산협의회에 심사 의뢰</u></p> <p>5. <u>시민 및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 그 밖의 기능분과의 의견 심의·조정·결정</u></p> <p>6. <u>총회·기능분과 개최 및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u></p> <p>7. <u>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u></p> <p>8. <u>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u></p> <p>9. <u>위원회 사업에 대한 평가</u></p> <p>10. <u>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u></p> <p>제19조의1(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u>시장은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실·국·본부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② <u>민관예산협의회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u></p> <p>③ <u>민관예산협의회는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한다.</u></p>	<p>제22조(민관예산협회의 설치 및 구성) ① <u>시장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과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본부·국별로 민관예산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민관협의회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u></p> <p>② <u>민관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특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의 회장을 포</u></p>

현행	개정안
<p>④ <u>민관예산협의회는 회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⑤ <u>민관예산협의회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u></p> <p>⑥ <u>간사는 민관예산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u></p> <p>⑦ <u>그 밖의 시 재정분야에 관한 시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분과를 둘 수 있다.</u></p> <p>⑧ <u>그 밖의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u></p>	<p><u>합한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u></p> <p>③ <u>민관협회의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④ <u>민관협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민관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⑤ <u>민관협회의 회장은 민관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를 둘 수 있다.</u></p> <p>⑥ <u>민관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를 둔다.</u></p>
<p><u>제20조(분과위원회) ① 삭제</u></p> <p>② <u>삭제</u></p> <p>③ <u>삭제</u></p> <p>④ <u>삭제</u></p> <p>⑤ <u>삭제</u></p> <p>⑥ <u>삭제</u></p> <p>⑦ <u>삭제</u></p> <p>⑧ <u>삭제</u></p> <p><u>제21조(총회) ① 위원회는 총회를</u></p>	<p><u><삭제></u></p> <p><u>제17조(총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u></p>

현행	개정안
<p><u>개최하여 예산편성안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u></p>	<p><u>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총회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u></p>	<p><u>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③ 총회는 위 제2항 및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u>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과정에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 절차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④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u></p>	<p><u>④ -----아닌 사람이 -----</u> ----- ----- -----.</p>
<p><u>⑤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은 예산안과 함께 <u>서울시의회에</u> 제출한다.</u></p>	<p><u>⑤ 시장은 총회-----</u> ----- <u>시의회-----</u>.</p>
<p><u>제22조(회의소집) ① ~ ② (생략)</u></p>	<p><u>제18조(회의소집) ① ~ ② (현행과 같음)</u></p>
<p><u>제23조(회의록 공개의 원칙)</u></p>	<p><u>제19조(회의록 공개의 원칙)</u></p>

현행	개정안
<p>제24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신설></p> <p>제5장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p> <p>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20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현장조사 및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지원하거나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5장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p> <p>제25조(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신설></u></p> <p>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u>시민참여예산위원회</u>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u>25명</u>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p> <p>③ (생략)</p> <p>④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를 둔다.</p> <p>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시민참여예산제 <u>운영 총괄 담당사무관</u>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p> <p>⑥ ~ ⑧ (생략)</p> <p>⑨ 간사는 <u>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u></p> <p>⑩ 협의회는 시민들의 예산교육</p>	<p>3. <u>지역회의, 위원회, 협의회 운영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u></p> <p>4. <u>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지원</u></p> <p>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u>위원회</u>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u>50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u>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④ ----- ----- ----- <u>운영 담당 사무관</u> ----- ----- -----.</p> <p>⑤ ~ ⑦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p> <p><u><삭제></u></p> <p><u><삭제></u></p>

현행	개정안
<p>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p> <p>①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p> <p>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u>협의회</u> 회장은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최한다.</p> <p><u><신 설></u></p>	<p><u><삭 제></u></p> <p>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u>협의회</u> 회장은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최한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장 <u>지원 등</u></p>	<p>제6장 <u>지원 등</u></p>
<p>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 <u>민관예산협의회</u>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u>민관예산협의회</u>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u>」 및 같은</p>	<p>제2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민관 협의회</u>-----</p> <p>③ ----- <u>민관 협의회</u>-----</p> <p>-----범위 안에서 <u>실비 등</u>-----</p>

현행	개정안
<p><u>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④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종류·액수는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선정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u></p> <p><u>⑥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u></p>